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203-10

수탁보고 2021-11 [별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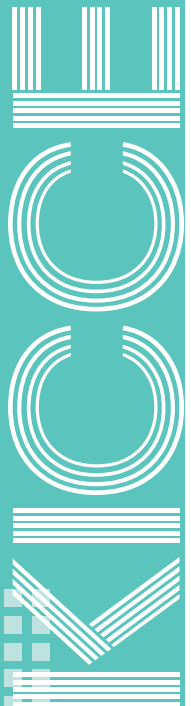


별책 2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2021. 12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203-10

수탁보고 2021-11 [별책 2]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202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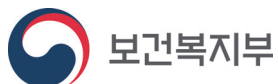
연구책임자 **이 정 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엄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강 규 돈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위원)
김 다 영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위원)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203-10
수탁보고 2021-11 [별책 2]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주 소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KT&G 세종타워 B 오피스 1동)
전 화 044-202-3398
팩 스 044-202-3966
인 쇄 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 책은 육아정책연구소가 2021년 보건복지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수행의 결과물을 별책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본 책은 2021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최종안입니다.

I. 평가 개요	1
1. 평가항목의 기본 틀	3
2. 평가항목의 이해	3
3. 평가방법	4
4. 산후조리원 시범평가기준의 구성(안)	4
II. 평가항목 충족기준의 이해	7
1. 기본원칙	9
2. 평가항목 충족기준	9
III. 평가항목의 이해	11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3
1. 인력 적정성	15
2. 인력 전문성	17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25
3. 시설 적정성	27
4. 시설 안전성	30
Ⅲ. 운영과 질 관리	39
5. 운영관리	41
6. 질 관리	50
7. 경영 관리	53
Ⅳ. 감염예방관리	55
8. 감염예방	57
9. 감염관리	74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77
10. 산모 건강평가	79
11. 모아애택	81
12. 부모교육	83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87
13. 신생아확인	89
14. 신생아 건강평가	91
15. 신생아관리	93

부록.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2021 최종안)	100
---	------------

I

평가 개요

- 01 평가항목의 기본 틀
- 02 평가항목의 이해
- 03 평가방법
- 04 산후조리원 시범평가기준의 구성(안)

1. 평가항목의 기본 틀

- 평가항목은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과 질 관리, 감염예방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상호교류하면서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질 관리 문화형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평가항목의 이해

○ 평가대상

-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평가항목의 분류

-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에서 항목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정규] : 평가결과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 [필수] : 평가결과 결정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하는 평가항목
 - [시범] : 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규문항에 포함될 예정인 항목

○ 평가영역 구분

- 평가영역 구분별 설명

평가영역(S,P,O)		설명
S	System	구조: 규정(내규, 지침 등), 절차, 계획의 수립
P	Process	과정: 계획 수립 및 시행, 개별교육, 숙지, 인지, 수행정도 확인
O	Outcome	결과(성과): 지표를 선정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

■ 미해당 항목

- 사전 제출한 자료 검토를 통해 ‘미해당’ 항목으로 확인된 경우, 본 평가 시 평가위원이 진위를 확인하여 ‘미해당’으로 판단한다.
- ‘미해당’으로 판정된 평가항목은 결과판정을 위한 집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규정, 지침, 내규 및 절차

■ 개념 정의

- 산후조리원 내부에서 정한 업무표준을 총칭하며,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원칙, 서비스제

공에 대한 원칙, 업무지침 등을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정의한 내부준칙을 말한다.

- 규정은 관련 법규나 국제표준 또는 공인된 지식체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 절차는 업무 혹은 서비스 과정(프로세스)을 정의한 것으로 해당 프로세스의 변경에 따라 수정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 모자보건법 상 산모의 법적용어는 임산부이며, 신생아의 법적용어는 영유아이다.
- 해당 규정(지침, 내규 등) 및 절차, 계획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하 평가항목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결과는 '무' 또는 '하'로 판정한다.

3. 평가방법

○ 평가장소

- 평가항목에서 제시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산후조리원 내 관련 장소에서 평가한다.

○ 평가대상

- 평가항목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직원, 산후조리업자, 산모에게 질문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법 관련 용어설명

평가방법	용어설명
DR(Document Review)	규정(내규, 지침 등) 및 절차 검토
Tracer - IT(Individual Tracer) - ST(System Tracer)	- 직원, 산모 면담조사 - 기록 검토 - 관찰 - 근거서류 및 관련자료 검토

4. 산후조리원 시범평가기준의 구성(안)

○ 6개 대영역, 15개 중영역, 30개 소영역, 98개 평가항목(시범적용: 3개 평가항목)

* ME: Measure Element, 평가항목

* 괄호(): 시범항목 개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가항목 (ME)	분류		
				필수	정규	시범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4	10	3	7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1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4	1	3	
		2.2 종사자 교육·계발	3	1	2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2		2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가항목 (ME)	분류		
					필수	정규	시범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2	4		15	6	9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4	1	3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5		5	
		4.2	소방안전관리	4	3	1	
		4.3	낙상예방관리	2	2		
III. 운영과 질 관리	3	6		21	5	13	3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5	2	3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2	2		
		5.3	문서관리	3		3	
		5.4	방문객관리	3	1	2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5		5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3(3)			3
IV. 감염예방관리	2	8		25	10	15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5	5		
		8.2	개인보호구 착용	2		2	
		8.3	세탁물관리	2		2	
		8.4	물품 소독·관리	3		3	
		8.5	환경관리	2		2	
		8.6	급식관리	6		6	
		8.7	종사자 관리	3	3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2	2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3	3		11	9	2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2		2	
	11. 모아애타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3	3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6	6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3	5		16	7	9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3	3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3		3	
		15.1	위생관리	2		2	
	15. 신생아관리	15.2	신생아 수유	5	1	4	
		15.3	안전관리	3	3		
6	15	30		98	40	55	3

II

평가항목 충족기준의 이해

01 기본원칙

02 평가항목 충족기준

1. 기본원칙

- 산후조리원 평가에서는 평가항목 충족수준과 결과판정 수준을 산후조리원 간, 평가항목 간 평가결과의 변별이 가능하도록 점수화 체계를 구성하였다.
 - 평가항목의 객관적인 변별을 위해 항목별 평가방법 및 결과판정 기준을 제시함
 - 평가결과 등급판정 기준에는 전체 평가항목(Measure Element, ME), 각 영역별 평가항목(ME)에 대한 충족여부를 위한 기준을 포함함

2. 평가항목 충족기준

- 유/무
 - 유: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100%로 10점
 - 무: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100% 미만으로 0점
- 상/중/하
 - 상: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80% 이상 ~ 100%로 10점
 - 중: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60% 이상 ~ 80% 미만으로 5점
 - 하: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60% 미만으로 0점

평가결과	점수	충족기준	평가결과	점수	충족기준*
유	10점	100%	상	10점	80%이상
			중	5점	60%이상~80%미만
무	0점	100% 미만	하	0점	60%미만

(*경우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 '상'에 대한 충족기준을 100%로 할 수 있음)

III

평가항목의 이해

-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 III 운영과 질 관리
- IV 감염예방관리
-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2. 인력 전문성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중영역	평가기준
1. 인력 적정성	1.1 법적인력기준을 준수한다.
2. 인력 전문성	2.1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2.2 직원의 직무능력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2.3 산모,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1. 인력 적정성]

기준 1.1

법적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평가목적

직원의 수 또는 구성에 대해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평가 영역	분류	평가결과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DR	S	필수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건강관리 인력(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구분	내용	비고
간호사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함.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근무 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함.
간호조무사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함.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음(간호조무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체 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에 해당하는 전체 수는 반드시 충족해야 함).	
건강관리책임자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두어야하며, 이 경우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음.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지침(고시)」, [별지 제1호서식]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작성·비치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됨. (산후조리원 근무시간에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행위 불가)

○ 그 밖의 인력

- 취사부(조리원) 및 영양사

- 임신부(산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조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1회 30명 이상의 임신부(산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함.

- 청소 및 세탁담당자

- 규모에 따라 임신부(산모)실 및 영유아(신생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음.

※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 면허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음.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보건소 실태 조사서 결과 확인

(※ *:모자보건법 일반서식,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같음함)

- 1) 종사자 근무표, 종사자 관리 대장*
- 2)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 신생아 입실자료 - 신생아 자원 관리 대장

○ 판정기준

1) 법적 인력기준 준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추 - 1명 이상의 상시근무 간호사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	-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추었으나 상시근무 간호사 충족 못함 - 또는, 보건소에서 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분기별로 4회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로 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해결한 경우	- 보건소에서 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분기별로 4회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로 시정 조치를 받음

[2. 인력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기준 2.1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DR	P	필수	☐ 유	☐ 무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DR	P	정규	☐ 상	☐ 중	☐ 하
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DR	P	정규	☐ 유	☐ 무	

평가항목의 이해

- 1) 인사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직원 채용절차
 - 자격조건(근무경력 등)
 - 건강검진확인(근무예정자의 건강진단, 예방접종, 잠복결핵검사)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
 - 인사정보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정보(예: 면허, 교육 등) 갱신 및 관리
 - 직무 관련 보수교육 및 훈련 사항
 - 직무기술서 작성 및 관리
 - 직무 내용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 자격요건 등
 - ※ 설비/소방담당, 산모교육 담당, 감염관리 담당, 급식관리 담당, 문서관리 담당, 자체점검 담당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2) [필수] 직원 채용절차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모집/배치한다.

- 3)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정보(면허, 교육, 훈련정보 등)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별로 보관한다.
- 4) 직무기술서는 직무내용 및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직무기술서는 산후조리원의 규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수정, 보완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종사자 임용 서류 및 자격/면허갱신 서류
- 종사자의 건강검진진단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종사자 보안 각서(개인정보 취급자 보안 서약서)
- 직무기술서
- 신규 채용 직원 결격 사유 조회 신청서 (산후조리원용)
- (※ 병의원 부설인 경우 병의원 종사자 인사정보도 같이 확인함)

○ 판정기준

1)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인사관리 규정이 있으며, 규정에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직원 채용 절차에 따른 적정인력 모집/배치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법정 건강검진(잠복결핵검사 포함) 및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일해)을 받은 근거서류가 있음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채용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확인 - 개인정보 보안각서 확인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중 1개라도 실시하지 않음 -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없음 - 개인정보 보안각서를 받지 않음 - 위의 1개 이상의 경우에 해당

3) 인사정보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사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직원별로 인사정보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음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 - 종사자 관리대장이 누락없이 작성되고 연도별로 관리함	- 일부 직원의 인사정보 관리가 미흡함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대부분 있음 - 종사자 관리대장이 일부 누락되고 연도별로 관리하지 않음	- 다수의 직원의 인사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음

4) 직무기술서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직무 기술서가 있고, 자격 요건에 따른 담당직무가 명시되어 있음	- 직무기술서가 없거나, 자격 요건에 따른 담당직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개발]

기준 2.2

직원의 직무능력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목적

직원의 자격유지 및 업무 전문성 개발을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DR	P	정규	☐ 상	☐ 중	☐ 하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DR	P	필수	☐ 유	☐ 무	

평가항목의 이해

- 1) 연간 직원 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연간 교육 계획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예산 등
 - 교육 종류 및 내용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교육
 - ① 산후조리업자교육(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 대상: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는 경우에만 건강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시기: 1년마다 1회, 8시간 이상
 - 내용: 감염예방, 감염·안전관리 등 임신부(산모) 및 영유아(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 ② 소방안전교육(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대상: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시기: 2년마다 1회
 - ③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 및 기타 직무 교육
 -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직원 교육)(건강관리인력 및 그 밖의 인력)
 - ① 필수 교육: 감염관리교육, 소방안전교육

- 교육 주체: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교육 대상: 산후조리원 종사자
- 교육 일정: 최소 연 1회, 건강관리인력 4시간 이상, 그 밖의 인력 1시간 이상
- ② 소방안전 교육
 - 교육 주체: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교육 대상: 산후조리업 종사자
 - 교육 일정: 최소 연 1회, 매년 2시간 이상
 - 교육 내용(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 ③ 기타 직무 교육
- ④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 2020년 2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교육 진행(추후 근거자료 삽입)

2)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자체 또는 외부교육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지원)한다.

3) [필수]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수 교육을 이수한다.

※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

교육	근거 법령	주기	기타 세부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 1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연 1회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의무 고용 미 이행시 고용부담금 징수 대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인식개선 교육 실시
소방 안전 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년에 1회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대상임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연 1회	
위생 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	2년에 1회(조리사, 영양사)	집단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 조리사 교육
실내공기질관리 교육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신규: 1년에 1회 보수: 3년에 1회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각 교육 당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이므로 교육을 권장한다.

4) 기타 직무 교육은 산후조리원별로 방침에 맞게 실시한다.

기타 직무 교육: 산모신생아 안전관리, 개인정보보호교육, 서비스 질 개선 교육 등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연간 교육 계획서
- 교육이수 근거서류: 교육일지, 또는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0. 1. 16.>
- 종사자 교육 대장(자체 교육 확인용)
-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근거 서류

○ 판정기준

1) 연간 직원교육 계획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연간 교육계획에 필수교육과 직무교육이 모두 포함하며 연간 직원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계획에는 예산(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연간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됨	-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2)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매년 자체 또는 외부교육을 실시(지원)하고, 종사자 모두 계획에 따라 교육을 이수함 - 기타 직무교육 시행(50% 이상) - 신규 직원에게 업무 시작 1주 이내 교육(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종사자 교육관리대장의 교육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관되어 있음	- 필수 교육의 일부만 시행함 ※ 필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 - 교육 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음	- 자체 또는 외부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음 - 필수 교육을 시행하지 않음

3)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회 8시간 이상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함. - 교육이수 수료증 있음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음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관계 법령에 필수교육 이수하지 않음

[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간 의사소통]

기준 2.3

산모,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평가목적

직원의 근무교대 시 정확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산모, 신생아의 정보를 공유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DR/IT	P	정규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근무교대 시 종사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정보공유 방법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근무교대일지
 - 정보공유 내용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기본정보
 - 인계시점에서의 임산부(산모), 신생아 상태
 - 필요 시 제공되어야하는 처치 등
- 2) 직원은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 절차를 알고 있으며, 건강기록부와 근무교대일지를 이용하여 산모, 신생아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근무 교대 규정
 - 근무 교대 일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료)

- 임신부(산모) 건강기록부*,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료)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제17호서식

○ 판정기준

1)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근무교대 시 종사자 간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건강기록부, 근무교대일지에 정보공유 내용이 충실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2개 모두 충족	- 건강기록부, 근무교대일지에 정보공유 내용이 일부 미흡하게 기록됨 -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 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 숙지 60%이상	- 근무교대일지 작성하지 않고 건강기록부에 정보공유 내용이 매우 미흡하게 기록됨 -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 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 숙지 60%미만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4. 시설 안전성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중영역	평가기준
3. 시설 적정성	3.1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4. 시설 안전성	4.1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4.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 직원,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한다.
	4.3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위해 낙상 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3. 시설 적정성]

기준 3.1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평가목적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산모)실, 영유아(신생아)실의 시설기준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한 시설을 갖춘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IT	S	필수	☐ 상 ☐ 중 ☐ 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있다.	IT	P	정규	☐ 유 ☐ 무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IT	S	정규	☐ 유 ☐ 무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IT	P	정규	☐ 유 ☐ 무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세면대 또는 손 소독기(소독제) 등 손 씻기 시설을 갖춘다.
 - 손 씻기 시설: 세면대, 손소독제 등
 - 세면대(싱크대): 영유아(신생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신생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 2) 영유아(신생아)실 내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
- 3) 신규로 입실하는 신생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사전관찰실을 둔다.
 - 사전관찰실: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커튼은 제외)으로 분리하여야 함
(※ 2017. 7. 1.부터 시행)
- 4) 영유아(신생아)실은 언제든지 산모가 관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 산후조리원 법적 설치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임신부(산모)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따름)

- 임신부(산모)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 임신부(산모)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임신부(산모)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 영유아(신생아)실

-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함)을 제외한 영유아(신생아)실의 면적: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

※ 공용면적 제외는 2017. 7. 1.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일반기준

- 임신부(산모)실 및 영유아(신생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참고: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임신부(산모)실 및 영유아(신생아)실은 1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 제 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2018.1.1. 이후 신고를 하는 산후조리원 적용).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신부(산모)와 영유아(신생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산후조리원 도면
- 임신부(산모)실, 영유아(신생아)실 적정성 확인(관찰)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 모자보건법 일반서식,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갈음함)

○ 판정기준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 손 씻기 시설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산후조리원 입구에 손 씻기 시설(세면대 또는 손소독제)을 갖추고 있음 -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추고 있음 ⇒ 2개 모두 충족	- 신생아실에만 손 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추고 있음	- 2개 모두 없음 - 산후조리원 입구에만 손소독제가 있음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 간격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하다.	-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하지 않다.

※ 모자보건법 일반서식,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갈음함

3) 사전관찰실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사전 관찰실이 있으며,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음	- 사전 관찰실이 없음 - 투명한 벽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4) 외부에서 신생아실 관찰 가능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신생아실은 언제든지 산모가 관찰이 가능함	- 신생아실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음

[4. 시설 안전성: 설비관리]

기준 4.1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전기 및 물 공급, 수질감시, 가스 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정규	☐ 유	☐ 무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DR	P	정규	☐ 유	☐ 무	

평가항목의 이해

- 1)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계획
 - 시행시기 및 예산을 포함한 시설의 안전점검, 유지, 보수 계획 등
 - 전기·가스 설비 감시 및 관리
 - 자체점검 및 정기검사 등
 - 급수설비 및 수질 감시 및 관리
 - 급수설비 위생 점검
 - 저수조 청결상태 점검, 수질검사
 - 하수도 관리
 - 정수기 관리 등

○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참조

- 실내공기질 측정의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임

2)~5) 계획에 따라 시설 및 환경의 안전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계획
- 전기, 가스, 급수설비 안전점검 근거서류
-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근거서류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 판정기준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되어 있어야하고 관리 계획서 구비)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 됨	- 규정이 없음 (안전관리담당자 지정되어 있지 않고, 관리 계획 없음)

2) 전기설비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 점검표 3개 항목 충족	- 미충족

3) 가스설비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주기적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함 - 점검표 3개 모두 충족	- 주기적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점검표 2개 이하 충족

4) 급수설비 및 수질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2개 항목 모두 충족	- 점검표 1개 항목 충족	- 미충족

5)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관리 기준을 준수 - 에어컨, 환기시설 오염상태 확인 및 조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에어컨, 환기시설 오염상태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음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점검항목	중점점검사항	이상 유무 확인	
		충족여부	조치결과
전기	1.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사용 유무 및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전기시설 사용 적정여부(문어발식 사용금지)		
	3. 전선의 피복상태		
	4. 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손상여부		
가스 시설	1. 가스시설 사용 적정 여부		
	2. 가스사용 구역 가스 누설 유무		
	3. 가스누설 경보 자동 차단장치 상태		
급수	1. 정수기 오염상태 확인		
	2. 정수기 기록 유지관리 확인		
실내 공기	1.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 관리기준 준수		
	2. 에어컨 오염상태 확인		
	3. 환기시설 오염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공기청정기가 있을 경우는 점검사항에 추가함.
 ※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오염 상태 점검 및 조치는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을 따른다.
 ※ 중대재해처벌법(법률 제17907호),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6606호) 등의 수정 여부 확인 및 안내.

[4.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관리]

기준 4.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 직원,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산모와 신생아, 직원, 방문객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 상 ☐ 중 ☐ 하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DR/IT	P	필수	☐ 상 ☐ 중 ☐ 하
3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DR/IT	P	필수	☐ 상 ☐ 중 ☐ 하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IT	P	정규	☐ 유 ☐ 무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 예방점검 계획
- 소방시설,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소화설비(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 경보설비(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
 - 피난설비(완강기 혹은 구조대),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 소화용수설비(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등)
 - 피난경로(대피로) 점검(피난경로 장애물 비치 여부 확인)
 - 비상구 점검(개방여부, 장애물 비치 여부 확인)
-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
- 신고체계(비상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 편성
 - 피난층 위치, 안전구획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 설정
 - 직원의 역할분담, 산모 및 신생아, 직원의 대피 장소에 대한 배치

- 유형별(산모, 신생아) 대피 계획 및 후송 계획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계획
 - 소방안전 교육(최소 연 1회 이상) (※ 1-2 인력적정성: 종사자 교육 계발과 중복)
 - 교육대상, 교육일정
 - 교육내용(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 소방훈련(최소 연1회 이상)
 - 대상: 산후조리원 종사자(직원)
 - 훈련내용: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 비상대응훈련
- 2) [필수] 화재예방을 위해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 3) [필수] 계획에 따라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알고 있다.
-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설치되어 있다.
 - 연락체계: 응급벨, 인터폰(핸드폰은 제외함)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소방안전 관련 규정
 - 소방서에서 시행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확인(연 1회)
 -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화재예방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 확인
 - 소방훈련 근거서류(종사자 교육 대장으로 대체 가능)

○ 판정기준

1) 소방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소방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고, 내용을 모두 포함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화재예방 점검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 현장 점검시 이상 없음	- 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 현장 점검시 3개 항목 이하 미흡	- 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 현장 점검시 4개 항목 이상 미흡

■ (소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용 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 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계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 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화재 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합판·목재 방염성능확보 여부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⑬ 방염 소파·의자 사용 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3) 소방훈련 수행 여부 확인 및 직원 숙지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	-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60% 이상	-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하지 않음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60% 미만

4) 응급상황 시 연락체계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응급벨, 인터폰, 유선전화기(단축키 지정) 등)가 있음 (※ 연락체계로 핸드폰은 제외)	-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없거나, 연락체계로 핸드폰을 사용함

[4. 시설 안전성: 낙상예방관리]

기준 4.3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위해 낙상 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평가목적

낙상으로 인한 산모와 신생아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 상	☐ 중	☐ 하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DR/IT	P	필수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낙상예방활동
 - 낙상예방교육(수면 전 화장실 다녀오기, 잘 맞는 신발 착용 교육 등의 안내문 부착 등)
 - 환경 및 시설점검(바닥 미끄럼방지, 문턱관리, 조명관리, 낙상예방 안내문 부착 등)
- 2) [필수] 직원은 규정에 따라 낙상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 내용
 -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
 - 낙상 예방 활동 근거 서류
- 판정기준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규정이 없음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 (예방교육, 점검서류 등)	- 점검표 3개 항목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 (예방교육, 점검서류 등)	- 미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없음

■ 낙상예방 안전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실, 산모실 실내바닥 미끄러움 상태			
2	산모, 신생아실 직원의 신발 바닥 확인 (산모와 직원의 신발바닥에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거나 신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음)			
3	낙상예방 안내문(스티커) 부착 (산모실, 신생아실 모두 안내문 또는 스티커 부착)			
4	조명관리(야간 조명관리 등)			



운영과 질 관리

5. 운영관리

6. 질 관리

7. 경영 관리

Ⅲ. 운영과 질 관리

중영역	평가기준
5. 운영관리	5.1 입·퇴실을 관리한다.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갖추고 있다.
	5.3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5.4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문객을 관리한다.
6. 질 관리	6.1 질 관리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7. 경영관리	7.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점검한다.

[5. 운영관리: 입·퇴실관리]

기준 5.1

입·퇴실을 관리한다.

평가목적

입·퇴실 수속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입·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DR	S	필수	☐ 유	☐ 무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IT	P	필수	☐ 유	☐ 무	
4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DR/IT	P	정규	☐ 상	☐ 중	☐ 하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입·퇴실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산모 및 신생아 입·퇴실 관리
 - 입·퇴실 수속 절차(방법), 입·퇴실 지연 시 관리방법 등
 - 입실 시 제공하는 정보
 - 입실생활 안내, 요금체계, 서비스 내용 등
 -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소지품 분실 및 도난, 신생아 유괴, 산모와 신생아의 외부 출입 등)
 -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 계획
 - 감염예방 관리 계획
 - 감염 또는 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계획(이송여부 결정기준, 이송절차 등)
 - 낙상 예방 계획
 - 퇴실 시 산모 교육: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2)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3)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입실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을 산후조리원(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마사지, 사진촬영 등의 부가서비스도 이를 준수해야하며, 산후조리원과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를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함)
- 4)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하거나 자료를 제공한다.
- 5) 입·퇴실 수속 절차를 준수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입·퇴실 관련 규정
 - 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가입증명서
 - 입소생활안내문: 입실 시 산모 교육 근거 자료
 - 서비스 내용, 이용 요금 등의 게시(비치 확인)
 -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고객용)

○ 판정기준

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됨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비치)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입실 시점에 약관,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산모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하고 있음	- 입실 시점에 약관,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게시(비치)하고 있지 않음

4) 입실, 퇴실 시 산모교육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 -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계획 - 감염예방 관리계획 - 의료기관 이송계획 - 낙상예방 계획 ○ 퇴실 시 산모 교육 :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위의 내용을 모두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확인	-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일부내용 (3개 이상)에 대해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퇴실 시 산모교육을 시행하고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 입실, 퇴실 시점에 산모에게 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5)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8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미만

[5. 운영관리: 의료기관 연계·이송]

기준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갖추고 있다.

평가목적

산모·신생아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DR	S	필수	☐ 상 ☐ 중 ☐ 하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DR/IT	P	필수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이송여부 결정기준
 - 이송절차
 - 보건소 보고 지침
- 2) [필수] 의료기관 연계·이송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산모 및 신생아를 이송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이송하고, 이송된 산모 및 신생아가 있는 경우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절차)
 -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 *: 최근 1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제19호서식

- 임신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 결과*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판정기준

1)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고, 지침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이송 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는 지침(보고해야하는 사항, 보고 담당자, 보고시점 등 포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규정 내용이 2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침이 없음 (규정 내용이 1개 이하)

2)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준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산모 및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여부 결정 기준 ○ 이송절차(이송방법, 이송수단) ○ 이송보고(보고방법, 보고사항) - 위의 내용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80% 이상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근거서류 확인)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에 대한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의 숙지 60% 이상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에 대한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60% 미만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시기가 지연됨

[5. 운영관리: 문서관리]

기준 5.3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평가목적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문서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DR	P	정규	☐ 상	☐ 중	☐ 하
3	문서의 대출, 열람 및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문서목록(산후조리원 자체 목록 지정)
 - 문서 기록방법
 - 문서 기록, 수정 방법 및 기재내용
 - 문서의 대출, 열람(사본발급포함) 절차
 - ※ 건강기록부: 임신부(산모) 또는 영유아(신생아)의 법적대리인이 임신부(산모)/영유아(신생아)기록부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4항)
 - 문서 보관방법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 문서 접근권한 관리
 - 문서 보관, 유지 및 파기방법 등
- 2) 건강기록부를 규정에 따라 기록, 수정한다. 수정 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수정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 3) 문서의 대출, 열람 및 반납 절차를 준수하여 문서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누출을 방지한다.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임신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 문서 보관 장소 확인
- 문서 대출, 열람 및 반납 내역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제17호서식

○ 판정기준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보관중인 문서에 대한 관리규정(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함	- 규정이 없음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하지 않음

2) 건강기록부 기록(수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임신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최소 5건) - 건강기록부는 매일 기재되어 있고, 항목별 사항도 누락 없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건강기록부에서 수정한 내용이 모두 규정의 내용을 준수함	- 일부 건강기록부의 내용이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 3건 이상은 모두 기록되어 있음 - 수정한 내용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	- 건강기록부의 내용이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 3건 이상이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 수정한 내용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

3) 문서 대출, 열람 및 반납 절차 준수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문서 대출, 열람, 반납 절차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80% 이상 - 대출, 열람절차에 따른 근거서류 확인 가능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문서 보관	- 문서 대출, 열람, 반납 절차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60% 이상 - 대출, 열람절차에 따른 근거서류 없음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문서 보관	- 문서 대출, 열람, 반납 절차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60% 미만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문서 보관하지 않음

[5. 운영관리: 방문객관리]

기준 5.4

산모·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문객을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IT	P	필수	☐ 상 ☐ 중 ☐ 하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을 위한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보호자 및 상시출입자 관리
 - (※ 상시출입자 예: 사진사, 마사지사, 식재료납품업자 등)
 - 방문객 관리
 - 출입절차 및 출입이 금지되는 사항
 - 위장관감염, 호흡기감염, 결막염, 기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산후조리원내 감염질환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등
 - 방문객 명부 작성
 - 방문 허용 시간대(면회시간)
 - 방문객이 지켜야 할 감염예방 수칙
 - 감염예방 교육(예: 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제공 등)
 - 외부물품 반입금지 사항 등
 - 손 씻기 시설 관리(세면대, 손소독제 등)
 - 보안사고 발생 예방 및 관리
- 2) [필수] 방문객의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을 입구에 게시하고, 산후조리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3) 산모 및 신생아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문객에 대한 출입관리 및 감염예방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방문객을 위하여 산후조리원 입구에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방문객은 출입 시 손 위생을 실시하도록 교육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방문객 관리 규정
- 방문객 명부 또는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 확인(세면대, 손 소독제 등)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확인(포스터 부착 등)

○ 판정기준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보호자(주출입자)는 산모가 지정한 1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방문객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있고, 인적사항, 방문일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음 -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감염이 있는 자 • 화농성 질환 등 감염성 피부질환이 있는 자 • 유행성 각결막염 등 안과질환이 있는 자 •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자 • 최근에 예방접종(MMR, 수두, 폴리오)한 아동과 접촉한 자 • 산후조리원 내 감염질환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등	-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있고, 인적사항, 방문일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됨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음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없음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지 않음

3) 방문객 감염관리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감염관리활동을 모두 수행함 •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제공) • 방문객용 세면대에 손 위생 물품 비치(손소독제 유효기간 표기) • 손 위생 홍보활동(근거자료 확인) - 평가일에 방문객 손 위생 수행 관찰(최소 5인): 100%실시	- 감염관리 활동 중 2개 수행 - 방문객 손 위생 실시 60% 이상	- 감염관리 활동 중 1개 이하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 있지 않음 - 방문객 손 위생 실시 60% 미만

[6. 질 관리: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기준 6.1

질 관리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목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질 향상을 위하여 질 관리 활동과 만족도 조사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산모, 방문객의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	P	정규	☐ 상	☐ 중	☐ 하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DR	O	정규	☐ 상	☐ 중	☐ 하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DR	P	정규	☐ 유	☐ 무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DR	P	정규	☐ 유	☐ 무	

평가항목의 이해

-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주제별 질 관리 활동 계획
 - 핵심지표 선정
 - 모자동실시간, 모유수유율, 손 위생 수행률, 감염발생양상, 안전사고발생 양상 등
 - 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선활동 관리
 - 만족도 조사 계획
 - 대상, 횟수(연 1회 이상), 시기, 조사 형식(설문지) 등
 - 조사결과 관리(조사결과 분석, 개선활동,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등)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안내, 접수(구두, 문서 등), 처리, 피드백 등)
- 2) 산후조리원에서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개선활동 성과를 관리한다.

-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4) 산모 및 방문객에게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5) 산모 및 방문객에게 불만 및 고충을 절차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처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질 관리 활동 및 만족도 조사 계획
- 질 관리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 판정기준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에 대한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질 관리는 최소 1개 이상 실시	-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질 관리, 만족도 평가 계획이 없음

2) 질 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 이상 (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이상)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핵심지표> - 모자동실시간 - 신생아실 이용시간 - 모유수유율 - 감염발생 양상 - 안전사고발생 양상	○ 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모니터링은 시행했으나 개선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필수: 손 위생 수행률 포함	- 계획은 있으나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 질 관리 활동 계획이 없음

3)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만족도 평가도구 있음 - 모두 만족도평가 실시함 - 만족도 분석결과를 업무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 ⇒ 4개 중 3개 이상 모두 충족	- 4개 중 2개 충족함 - 만족도 평가는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 분석 및 업무개선에 활용하지 않고 있음	- 4개 중 1개 충족 - 만족도 평가를 일부 시행하고 있거나 실시하지 않음

4) 불만 및 고충사항 안내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고충처리함, 안내문 등)	- 안내 없음

5)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접수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피드백 관련 서류 있음	- 피드백 관련 서류 없음

[7. 경영 관리: 리더십 및 조직문화]

기준 7.1

리더십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 관리 활동을 시행한다.

평가목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의 개선과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원장의 리더십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IT	S	시범	☐ 유	☐ 무
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IT	P	시범	☐ 유	☐ 무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DR/IT	O	시범	☐ 유	☐ 무

평가항목의 이해

-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
 - 모자동실
 - 신생아 및 방문객 감염 관리
- 2) 직원과의 의사소통
 - 직원과 원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여부 확인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안내, 접수(구두, 문서 등), 처리, 피드백 등)
-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회나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원장 인터뷰(모자동실, 신생아감염관리에 대한 질의)
- 직원 인터뷰

○ 판정기준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원장 인터뷰)

구분	유	무
시범	-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있음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있음	-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없음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없음

2) 직원과의 의사소통(직원 면담)

구분	유	무
시범	-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있는지 확인함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함	-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없음을 확인함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지 않음을 확인함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원장 인터뷰)

구분	유	무
시범	-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근거서류 확인)	-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음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9. 감염관리

IV. 감염예방관리

중영역	평가기준
8. 감염예방	8.1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 위생을 수행한다.
	8.2 개인보호구를 구비하고 있다.
	8.3 세탁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8.4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 및 물품관련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8.5 개인 및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8.6 조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한다.
	8.7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9. 감염관리	9.1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산모 및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8. 감염예방: 손 위생]

기준 8.1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 위생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종사자 및 산모는 손 위생 수행을 준수하여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 상	☐ 중	☐ 하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IT	P	필수	☐ 상	☐ 중	☐ 하
3	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IT	P	필수	☐ 상	☐ 중	☐ 하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IT	P	필수	☐ 상	☐ 중	☐ 하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IT	P	필수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질병관리본부(KCDC),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및 공인된 감염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한다.

○ 산후조리원 입구와 신생아실 입구에서 손 위생을 수행한다.

○ 손 위생 수행 대상: 직원 및 산모

○ 손 위생 수행 시점(예시)

구분	손 위생이 필요한 상황
일상적인 활동	- 근무 시작 전·후, 음식 먹기 전·후 -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고 난 후 - 오염물품을 만지거나 접촉 후(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오염세탁물 등)
신생아, 산모 간호	- 신생아 접촉 전·후 - 모유/분유 준비 전, 수유 전 - 기저귀 교환 전·후 - 상처 만지기 전·후, 혈액/체액에 노출된 후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손 위생] 참고

- 손 위생 수행 방법
 - 손 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액상 비누 및 손소독제 종류
 -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 예: 세면대 옆 홍보자료 비치, 게시판 등에 손 위생 관련 자료 부착 등
- 2) [필수] 직원은 규정에 따라 일상적인 활동 전·후, 산모와 신생아 간호 전·후 올바르게 손 위생을 수행한다.
 - 3) 산모는 신생아와 접촉 전·후, 수유 전 등 올바르게 손 위생을 수행한다.
 - 4) 손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공급하여 적절한 곳에 비치한다.
 - 5)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 및 보호자, 방문객, 직원 등을 대상으로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손 위생 규정(감염관리 지침 등으로 대체 가능)
 - 손 위생 물품 비치현황(비치장소, 사용기한 표기 등), 구매(입고)내역
 - 손 위생 수행 여부 관찰(직원, 산모)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 판정기준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직원 손 위생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80% 이상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 80% 미만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미만

3) 산모 손 위생 수행 여부 확인

(※ 최소 3항목 이상은 점검. 미해당은 수행 항목에서 제외한다.)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산모의 항목의 수행률의 80% 이상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산모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 80% 미만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산모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미만

4) 손 위생 물품 구비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 물품이 비치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사용기한이 모두 표기 되어 있음 -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 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이용함 - 신생아실 손 위생 건조는 종이타월(1회용 타월)을 이용함 - 손 위생 물품 구매(입고)내역 근거서류 있음	- 4개 중 3개 이상 충족함 - 손 위생 물품이 비치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나 사용기한 표기가 일부 되어 있지 않음	- 손 위생 물품이 소량 비치되어 있고, 사용기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 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이 아님 - 손 위생 물품 구매(입고)내역 근거서류가 없음

5)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실시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있음 • 세면대 옆 손 위생 방법 비치(부착) • 게시판에 손 위생 포스터 부착	- 2개 중 1개 실시함	-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없음

■ 손 위생 활동 점검표(산모)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음식 먹기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신생아 접촉 전·후				
4	모유/분유 수유 준비 전, 수유 전				
5	기저귀 교환 전·후				

■ 손 위생 활동 점검표(직원)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근무 시작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음식 먹기 전·후				
4	신생아 접촉 전·후				
5	모유/분유 준비 전, 수유 전				
6	기저귀 교환 전·후				

[8. 감염예방: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8.2

개인보호구를 구비하고 있다.

평가목적

감염예방을 위해 종사자는 필요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개인보호구착용 지침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 업무 중 감염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
 -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산모,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염소계 소독제 등) 등
 - 기구, 물품 세척 시(젖병 포함)
 - 개인보호구 목록관리
- 2)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일회용 가운 등)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보호구를 착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 내용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 판정기준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장갑, 마스크, 가운을 착용해야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음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지침이 없음

2)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80%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은 보호구(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착용하고 있음 ※ 확인 불가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등에 대한 직원 숙지 80%이상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60%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의 보호구 착용이 미흡함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60% 이상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60% 미만) - 보호구가 없음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60% 미만

[8. 감염예방: 세탁물 관리]

기준 8.3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목적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관리 및 감염발생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세탁물을 관리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세탁물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세탁물관리(※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세탁물의 수집, 운반, 세탁, 보관은 *오염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을 분리하여, 다른 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오염세탁물: 피, 고름이 묻었거나 분비물에 의해 젖어 있는 세탁물
 - *일반세탁물: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
 - 세탁물
 - 침구류: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 의류: 산모복, 신생아복, 유니폼, 가운 등
 - 린넨류: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린넨류
 - 기타: 커튼, 찌우개류, 수집용기(헤파) 등
 - 세탁물 보관 및 운반
 - 세탁물 수집: 수집장소의 별도 구획, 수집용기(헤파), 수집장소 관리(소독, 세탁물 분류 등)
 - 세탁물 운반: 수집용기(헤파)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밀봉하여 운반, 운반용기 관리(소독)
 - 세탁물 처리(자체 또는 외부 위탁처리)
 - 자체처리: 세탁실 관리, 세탁방법(오염/일반세탁물 분리세탁, 세제선택 등)
 - 위탁처리: 위탁계약서 비치

- 세탁된 세탁물 보관 •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 전용 보관 장소(신생아실, 산모실, 식당, 휴게실 등 왕래가 빈번한 장소와 떨어져 있음) ○ 폐기물관리 • 자체처리: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 위탁처리: 위탁계약서 비치 2) 규정에 따라 오염된 세탁물을 관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세탁물 수집 장소
 - 세탁 후 세탁물 보관 장소(전용 보관실)
 - 세탁물 처리 근거자료/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사본, 위탁계약서

○ 판정기준

1)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오염된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세탁물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5개 항목 이상 충족	- 점검표 4개 항목 충족	- 미충족

■ 세탁물 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세탁물 수집용기 유무			
2	세탁물 수집장소의 별도 구획 여부			
3	세탁물 수집장소 관리상태(청소일지, 청결상태 확인)			
4	세탁물 분리 수집 여부(오염/일반세탁물 분리보관)			
5	세탁물 처리 상태(자체세탁, 외부위탁 확인)			
6	세탁 후 세탁물 보관장소 관리상태			

[8. 감염예방: 물품 소독·관리]

기준 8.4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 및 물품관련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기구 및 물품의 감염예방 활동을 통하여 기구 및 물품 사용으로 인한 감염발생 위험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기구 및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 수유물품(젓꼭지, 모유/분유병, 뚜껑 등)
 - 기타(요람, 목욕대야, 유축기, 좌욕기 등)
 - 세척/소독된 물품 보관 관리
 - 소독제 사용기준(국내외 인증 받은 물품소독제 사용)
 - 세척직원의 보호구 착용: 세척 시 보호 장구 착용(방수가운, 마스크, 장갑 등)
- 2-3) 규정에 따라 기구 및 물품을 세척, 소독, 보관하고, 직원은 세척 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기구 및 물품관리 관련 규정
 -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보관장소
 - 신생아실 소독 점검표

- 세척직원 복장 확인
- 사용 중인 물품소독제 사용설명서와 인증서

○ 판정기준

1) 기구 및 물품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수유물품(젖병, 젖꼭지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하는 경우(자불: 열탕) 소독 또는 국내외 승인된 전용 소독제 사용) - 소독일지(신생아요람 관련사항 포함)를 작성하고 신생아요람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경우 - 목욕대야 소독은 중간수준 이상이며, 제품설명서에서 제시한 소독시간, 농도 등 준수함(직원 1인 이상 관찰) - 세척 시 필요한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있고, 세척 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세척하여야 함 ⇒ 4개 모두 충족	- 4개 중 3개 충족 (※ 필수: 수유물품 소독여부는 충족해야함)	- 미충족

3) 세척/소독된 물품 관리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수유물품(젖병, 젖꼭지 등)을 건조 후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신생아용품(기저귀, 물티슈, 비누, 목욕대야, 로션)은 신생아마다 개별보관, 사용하는 경우(단, 펌프용 비누, 펌프용 로션은 제외) - 목욕대야는 포개져 있지 않음(개별 포장 제외) - 유축갈때기, 좌욕대야는 산모마다 개별 보관, 사용하는 경우(단, 열탕소독을 하거나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는 경우 제외) ⇒ 4개 모두 충족	- 4개 중 3개 충족	- 미충족

[8. 감염예방: 환경관리]

기준 8.5

개인 및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환경위생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위생관리
 - 청소 및 소독을 포함
 - 개인위생관리: 산모/신생아복, 직원유니폼 관리 등
 - 환경위생관리: 침상(린넨)관리, 청소, 소독 등 공용시설 등의 환경관리 등
 - 환경소독제 사용기준(국내외 인증 받은 환경소독제 사용)
 - 쓰레기통은 손으로 열지 않는 것(예, 발로 여는 쓰레기통 등)을 사용
- 2) 개인 및 환경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환경위생관리 규정
 - 침구 및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 공용시설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 사용 중인 환경소독제 사용설명서, 인증서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판정기준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10개 항목 이상 충족 -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표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	- 점검표 7~9개 항목 충족 -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표가 있음 - 2개중 1개 이상 충족	- 미충족

■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2	신생아실, 산모실 내 꽃, 화분 비치 여부			
3	신생아실, 산모실 바닥 청결			
4	신생아 요람 관리			
5	수유준비실 관리			
6	신생아 목욕 싱크대 관리			
7	화장실 관리(산모실, 공용화장실)			
8	좌욕실 관리			
9	청소용품 관리(환경소독제 승인여부, 청소도구 관리 등)			
10	손 씻기 시설			
11	기구 세척실 관리			
12	청결물품 보관실 관리			

[8. 감염예방: 급식관리]

기준 8.6

조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한다.

평가목적

산모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리장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식재료, 식기, 조리기구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 미해당
3	식재료를 관리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 미해당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 미해당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 미해당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DR	P	정규	☐ 유	☐ 무	☐ 미해당

평가항목의 이해

■ 조리장을 자체 운영하는 기관: 평가항목 6, ‘미해당’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조리장 위생 상태 관리

- 청소, 구역관리(오염/비오염)
- 식기 및 조리기구 관리(소독 및 보관방법)
- 음식물 쓰레기 관리

○ 식재료 검수 및 보관

-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 보관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등

-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 온도관리, 식재료 종류별 분리보관, 청소 등
 - 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 복장준수(위생모자, 앞치마, 작업화, 마스크 등) 및 손 위생
 - 유증상(설사, 고열 등) 직원 관리 등
 - 외부 위탁 시 관리
 - 위탁업체 선정(위탁기관과의 계약서)
 - 위생관리 계획 확인(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및 운영계획, 급식사고 발생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 위탁기관의 안정성 확인(위탁기관 인증서,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 현황 등)
 - 급식 절차 등
- 2) 조리장의 위생상태(식기 및 조리기구 관리, 오염구역/비오염구역 구분, 음식물 쓰레기 관리 등)를 관리한다.
- 3) 식재료의 보관상태, 유통기한 등을 관리한다.
- 4) 조리장 냉장고 및 냉동고의 온도를 매일 점검(확인)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식재료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냉장고 및 냉동고 내·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 5) 조리장 직원은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 6) 조리장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
 - 위탁계약서, 인증서, 위탁 운영에 따른 급·퇴식 관리 규정
 - 식재료 유통기한, 보관상태 점검
 - 냉장고 및 냉동고 온도 표시 및 점검 유무 확인
 - 조리장 종사자 복장(위생모, 앞치마, 작업화, 마스크) 착용 및 위생상태 점검
 -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판정기준

1)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단, 위탁하는 경우 위탁 시 관리내용을 포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조리장의 식기,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건조된 상태로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조리장이 위생구역/오염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 당일 처리함	- 3개 중 2개 이상 충족	- 미충족

3) 식재료 관리상태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우 - 보관식품(제품)이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 - 식재료 개봉일자를 라벨링하여 관리하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	- 3개 중 2개 이상 충족	- 미충족

4)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냉장고와 냉동고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기록지 작성하고 있는 경우 - 식재료를 종류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 냉장고/냉동고 내외부가 청결한 경우(성예, 물기 없어야 함)	- 3개 중 2개 이상 충족	- 미충족

5) 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조리원이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 손 위생을 수행함(80% 이상) -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80%이상	- 일부 조리원이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손 위생을 수행함(60% 이상) -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60%이상	- 조리원이 복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조리원 복장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 - 손 위생을 수행함(60% 미만) -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60%미만

■ 조리원 손 위생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충족	미충족	미해당
1	조리실에서 작업 시작 전·후			
2	세척 안 된 식자재 및 오물 취급 후			
3	각기 다른 종류의 식재료 취급 및 조리 전			
4	생선, 날고기 등 취급 후			
5	음식을 만지기 전			
6	기구나 설비 사용 전			
7	화장실 출입 후			
8	쓰레기 취급 후			
9	신체 부위나 몸을 만진 후			
10	작업 중에 전화를 받은 후			
11	소독제나 세척제를 만진 후			
12	코를 풀거나 기침, 재치기 한 후			

6) 외부위탁 시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위탁기관의 안정성 확인(인증서,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등)이 이루어진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짐 - 급식절차대로 수행되고 있음	- 위탁업체 계약서가 없거나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8. 감염예방: 종사자 관리]

기준 8.7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직원의 건강 유지와 업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직원 건강유지 및 감염성 질환 전파를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직원 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 상	☐ 중	☐ 하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IT	P	필수	☐ 유	☐ 무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고 있다.	IT	P	필수	☐ 유	☐ 무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직원 안전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건강관리 활동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 직원 대상 예방접종 관리(인플루엔자, 백일해)
 - 직원 건강검진(장티푸스, 폐결핵, 감염성 피부질환, 잠복결핵검진 등)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은 년 1회 정기적으로 관리(백일해는 미포함)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관리 지침
 - 감염예방을 위한 점검활동(근무 시작 전 특정질환의 노출 경험 또는 보균상태 확인 등)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발생 시 절차, 직원의 근무 제한, 제한기간 등)
- 2)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해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 3) [필수]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고 있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관리 지침
-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감염·질환 예방 조치, (제16조 제2항 관련) <신설 2020. 1. 16.>

○ 판정기준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있고 교육을 실시함 - 종사자 위생관리점검표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종사자 위생 관리가 되었는지 확인함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없음 - 종사자 위생관리점검표를 확인하였으나 종사자 위생관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3)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대처방안, 근무 제한에 대해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100%)	- 대처방안, 근무 제한에 대한 직원의 숙지가 미흡함

[9. 감염관리]

기준 9.1

감염병으로부터 산모 및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평가목적

감염병 발생(의심) 시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산후조리원 내에 감염병 질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모 및 신생아, 직원을 보호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DR	S	필수	☐ 상	☐ 중	☐ 하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IT	P	필수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산모 또는 신생아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의 조치 및 관리 지침)
 ※ 참고: 보건복지부 감염관리지침을 따른다. 2019년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 관리 매뉴얼 참조
 ○ 감염병 환자군의 정의(예: 인플루엔자,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
 - 격리방법
 - 직원대상 격리 관련 교육 및 보호구 착용
 - 의료기관 이송계획 및 보건소 신고
 - 격리물품 구비
 - 신생아 추가 감염 확인 등
- 2) 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의료기관 이송 전까지 별도의 격리실에 격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 판정기준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고, 위 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구체적인 조치 및 관리계획 포함 되어 있어야 함)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지침이 없음

2)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 의 내용 숙지 8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 에 격리함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점검 서 류가 있음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 의 내용 숙지 6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 에 격리하지 않음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작성하 지 않음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 의 내용 숙지 60% 미만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 에 격리하지 않음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작성하 지 않음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1. 모아애착

12. 부모교육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중영역	평가기준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의 건강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11. 모아애착	11.1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을 위해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12. 부모교육	12.1 산모의 건강관리방안 및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10. 산모 건강평가]

기준 10.1

산모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에게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퇴실, 재원 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 상	☐ 중	☐ 하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1-2) 산모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다.

(※ 기록 및 보관방법 등은 [5.운영관리: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 산모 건강평가

- 입·퇴실 시, 재원 시 : 활력징후, 하혈유무, 유방사정, 부종, 대소변, 정서 상태(산후 우울) 등
- 산후우울증 평가 시 점수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권고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임신부(산모)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산후우울증 설문지

○ 판정기준

1) 입·퇴실 시, 재원 중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3건 확인)	- 일부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 (60%이상 기록 충족)	-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2) 재원 중 산모의 산후우울증 평가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를 시행함(설문지 작성) - 우울증 고위험군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 및 이송에 대한 근거 있음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하지 않거나 일부 산모에 대해 시행함. (설문지 작성) - 우울증 고위험군이 있으나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가 없음 - 2개중 1개이상 해당	-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하지 않았음.

[11. 모아애택: 모자동실, 모유수유]

기준 11.1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을 위해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평가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모유수유와 애착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모아애택을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필수	☐ 상 ☐ 중 ☐ 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필수	☐ 상 ☐ 중 ☐ 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필수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모아애택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자동실 운영
 - 사용기준, 시설과 환경관리, 주의사항, 사용설명과 동의 등
 - 모자동실 촉진 활동(교육)
 - 모유수유 촉진 활동(교육) 등
- 2) 계획에 따라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교육)을 수행한다.
- 3) 계획에 따라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교육)을 수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모아애택을 위한 계획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신생아실/산모실 이용시간, 모유수유 실시 확인)
-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모아애착 증진 서식

○ 판정기준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모자동실 운영, 모유수유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모아애착 증진 서식을 작성하고 있음	-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계획이 없음

2) 모자동실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근거자료 확인)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산생아의 비율이 80%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생아 5인을 선정하여 평가함. 단, 산모나 산생아의 건강상태로 모자동실이 어려운 대상자는 제외)	-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산생아의 비율이 60% ~ 80% 미만	-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산생아의 비율이 60% 미만

※ 모자동실 이용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산생아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5점 가산

3) 모유수유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근거자료 확인) -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80%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 5인을 선정하여 산생아 건강기록지를 이용하여 평가함. 단, 산모나 산생아의 건강상태로 모유수유가 금기인 경우, 산모가 거부한 경우는 제외)	- 모유수유를 실시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60% ~ 80% 미만	- 모유수유를 실시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60% 미만

※ 모유수유 촉진 활동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5점 가산

* 모유수유 촉진활동: 1) 개별교육, 2) 집단교육, 3) 부부교육, 4) 개별상담, 5) 부부상담, 6) 산생아 돌보기 시범, 7) 직접간호 제공, 8) 기타()

[12. 부모교육]

기준 12.1

산모의 건강관리방안 및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목적

출산 후 산모의 적절한 건강관리 및 안전하게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DR	S	필수	☐ 상	☐ 중	☐ 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DR	P	필수	☐ 상	☐ 중	☐ 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DR	P	필수	☐ 상	☐ 중	☐ 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DR	P	필수	☐ 상	☐ 중	☐ 하
5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DR	P	필수	☐ 상	☐ 중	☐ 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DR	P	필수	☐ 유	☐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부모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교육계획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예산 등

○ 교육내용

- 산모 건강관리방안

- 산모 위험상황(감염, 출혈, 우울 등)의 증상과 대처방법
- 산욕기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회음부 감염, 수술부위 감염, 자궁내막염, 복막염, 혈전성 정맥염 등의 예방방법 등)
- 회음패드 교환 방법과 좌욕 방법
- 유선염의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 영양섭취 기준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응급상황(구토, 설사, 발열, 황달, 무호흡 등)과 대처방법
-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과 모유수유방법
- 모유수유의 어려움과 해결방법
- 분유수유 하는 방법, 주의사항
- 수유자세, 트림방법 등
- 신생아 목욕방법
-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 배꼽관리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 방법
(예) 신생아 울음 이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발달 이해하기 등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

○ 교육방법

- 1:1 교육, 책자교육, 사이버교육 등
-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 활용

2~5) 계획에 따라 산모별, 교육별로 교육을 시행하고 관리하며 교육 참여를 촉진한다.

6) 아버지가 산후교육(산모의 산육기 교육),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교육계획 또는 교육지침
- 교육자료
- 교육이수 기록지: 교육일지 또는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 강의료 지불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판정기준

1) 부모교육 계획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부모교육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부모별, 교육별 계획 스케줄 • 이수자 관리 -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가 작성됨	-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계획이 없음

2) 산모 건강관리방안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산모건강관리방안'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산모 위험상황(감염, 출혈, 우울 등)의 증상과 대처방안 • 산욕기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패드교환 방법 및 좌욕방법 • 유선염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 영양섭취 기준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교육내용이 4개 이상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는 있으나 교육 자료가 없음	- 교육일정이 없음 - 교육내용이 4개 미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3) 신생아 돌봄 방법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돌봄'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신생아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과 방법 • 신생아 수유자세 • 신생아 목욕방법 •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 • 신생아 배꼽관리 방법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교육내용이 5개 이상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는 있으나 교육 자료가 없음	- 교육일정이 없음 - 교육내용이 5개 미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자료: 신생아 울음 이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발달 이해하기 등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일정이 없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5) 영아돌연사 예방방법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 일정이 없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6) 아버지의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 자료 근거서류)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신생아 돌봄서비스

- 13. 신생아 확인
- 14. 신생아 건강평가
- 15. 신생아관리

VI. 신생아 돌봄 서비스

중영역	평가기준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확인한다.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의 건강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15. 신생아 관리	15.1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
	15.2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5.3 신생아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13. 신생아 확인]

기준 13.1

신생아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식별한다.

평가목적

신생아 식별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 상	☐ 중	☐ 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IT	P	필수	☐ 상	☐ 중	☐ 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IT	P	필수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신생아 식별방법
 - 식별정보와 인식표 활용
 - 식별정보: 이름, 성별, 출생 시 몸무게, 출생일자 등
 - 인식표: 팔찌, 발찌, 네임스티커 등
 -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신생아 식별방법 적용
 - 동명 2인의 산모가 재실하는 경우 구분을 위하여 (산모명) 아기, (성별), (출생일자), (출생시 몸무게) 순으로 이용하여 구분한다.
 - 신생아 식별이 필요한 시점
 - 입·퇴실 시
 - 신생아아실 면회, 모자동실 이용, 수유 전, 목욕 시, 약품 투여 전,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등
- 2) [필수]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 3) [필수]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산모로부터 전달받는 경우 간호(조무)사 1인과 산모가 동시에 확인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신생아 출입기록지(신생아 건강기록부 대체 가능)

○ 판정기준

1)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신생아 인식표 사용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반드시 발찌 혹은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를 사용하고, 추가로 1개 이상의 인식표를 사용해야 함	- 발찌 또는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만 사용 - 발찌, 팔찌 이외의 인식표만 2개 사용	- 발찌, 팔찌 이외의 인식표 1개 사용

3)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전달 시 간호(조무)사와 산모가 확인함(관찰건수 100% 충족) - 2가지 이상의 신생아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확인함	- 관찰건수 60% 이상 - 신생아 식별 시 산모이름만 확인함	- 관찰건수 60% 미만

[14. 신생아 건강평가]

기준 14.1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평가목적

신생아의 입·퇴실, 재원 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 상	☐ 중	☐ 하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 상	☐ 중	☐ 하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1-3)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다.

(※ 기록 및 보관방법 등은 [5.운영관리: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 신생아 건강평가

- 입·퇴실 시, 재원 시 : 구토, 설사, 호흡수, 호흡양상, 체온, 피부발진, 배꼽상태, 눈 분비물, 황달, 예방접종여부 등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건강기록부)
-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판정기준

1) 입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100%)	- 일부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 (60% 이상 기록 충족)	-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2) 재원 중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1회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80% 이상 충족)	- 일부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60% 이상 충족)	-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3) 퇴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혹은 퇴원교육 체크리스트의 건강사정 5건 확인, 80%이상 충족)	- 일부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60% 이상 충족)	-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15. 신생아 관리: 위생관리]

기준 15.1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

평가목적

출생 후 면역체계가 성숙하지 못한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관리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감염발생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신생아 위생관리
 - 목욕관리
 - 배꼽관리
 - 눈 분비물 관리
 - 피부상태 관리(기저귀 발진 등)
 - 물품관리(수유물품, 목욕대야, 기저귀, 물티슈 등)
 - 배설물 처리 등
 - 신생아 위생관리는 건강한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재원 중 1일 1회 이상 실시
- 2) 신생아에게 감염성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수행하고, 신생아 용품은 개별 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신생아 위생관리지침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판정기준

1)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지침이 없음

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1일 6회 이상 기저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기록이 있음 - 모든 신생아의 배꼽상태가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기저귀가 배꼽을 덮지 않음 - 모든 신생아의 눈이 분비물이나 감염증상 없이 깨끗하거나, 감염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의료기관 진료 후 처방받은 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 (※ 재원중인 신생아 3인 선정하여 신생아기록지 확인) ⇒ 3개 모두 충족	- 3개 중 2개 충족함 - 3개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관찰되나 기록이 누락됨	- 미충족

[15. 신생아 관리: 신생아 수유]

기준 15.2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평가목적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신생아에게 적절한 수유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수유물품관리, 수유 준비, 보관된 모유나 분유 사용과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생아의 위장관감염 위험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 상	☐ 중	☐ 하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IT	P	정규	☐ 상	☐ 중	☐ 하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IT	P	필수	☐ 유	☐ 무	

평가항목의 이해

-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유의 보관 및 관리
 - 냉장·냉동 보관기한, 보관상태 점검 등
 - 분유의 보관 및 관리(분유 선택기준)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분유
 - 온전한 분유통에 담겨져 있는 분유
 - 시원한 실내에 보관된 분유 등
 - 수유준비과정 및 수유방법
 - 수유물품 사용방법, 모유(분유) 준비, 모유(분유)데우기 등
 - 모유(분유) 수유 방법
 - 수유 중 신생아 상태 관찰
 - 수유 후 처리방법

- 수유준비실 관리
 - 냉장·냉동고 관리
- 2) 냉장·냉동고에 보관 중인 모유는 산모별로 분리하여 모유에 라벨링하여 보관하고, 보관기한을 준수한다.
 - 3) 분유 선택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분유를 선택하고 관리한다.
 - 4) 수유를 준비하는 곳은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이 전파되지 않도록(목욕물이 튀지 않을 정도)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수유준비 전용 싱크대에서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 5) [필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하고, 수유 시 신생아 혼자서 젖병을 물지 않게 한다. 모유수유 시에는 신생아실과 구분된 수유실 또는 산모실에서 실시하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후 실시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수유관리규정(지침)
 - 수유준비과정 및 수유 관찰

○ 판정기준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냉장·냉동 중인 모유 관리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냉장·냉동고에 보관 중인 모유는 산모별로 분리, 라벨링하여 보관하고 있음 - 보관기한을 준수함 • 냉장 보관한 모유는 72시간 이내에 사용함(유통시간 기록되어 있고, 72시간 이내임) ⇒ 2개 모두 충족	- 2개 중 1개 이상 충족	- 보관 중인 모유가 산모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 보관기한이 경과된 모유가 있음

3) 분유 관리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분유를 사용함 - 온전한 분유통에 담겨져 있는 분유를 사용함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청결한 곳에 보관되어 있음 - 분유의 개봉일자가 라벨링되어 있음(분말분유는 3주, 액상분유는 제품 권장기간 이내 사용) ⇒ 4개 모두 충족	- 4개 중 3개 충족	- 미충족

4) 수유준비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수유준비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음 - 수유 준비 전용 싱크대가 있음 - 모유를 데울 때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않음 - 분유를 탈 물은 100℃이상 완전히 끓임 - 분유는 수유 직전에 준비하여 보관하지 않고 바로 수유함 (관찰 불가 시 직원 숙지 확인) ⇒ 5개 모두 충족	- 5개 중 3개 충족	- 미충족

5) 수유 실시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모유 수유 시 수유실 또는 산모실에서 실시함 - 젖병을 문 채로 혼자 있는 신생아가 없음 - 수유 후 남은 분유(모유)는 버림	- 젖병을 문 채로 혼자 있는 신생아가 있음 - 수유 후 남은 분유(모유)를 보관함

[15. 신생아 관리: 안전관리]

기준 15.3

신생아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신생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체적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 상	☐ 중	☐ 하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IT	P	필수	☐ 상	☐ 중	☐ 하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IT	P	필수	☐ 상	☐ 중	☐ 하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신생아 이동 시 안전관리 및 산모에게 인계 시 출생 정보 확인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
 - 신생아 수면자세 관찰(앙와위, 측위자세)
 - 요람 관찰(시트가 단단하며, 폭신한 베개나 인형이 없어야함)
 - 산모실에서 신생아 수면 시 교육(산모침대 사용하지 않기)
 - 신생아 호흡상태, 피부색 변화 관찰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신생아 안전관리 교육(대상: 간호사, 간호조무사)
- 2) [필수] 직원은 규정에 따라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 3) [필수] 직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신생아 안전관리규정(지침)

○ 판정기준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안전관리 규정이 없음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안전관리 교육 근거자료 확인) - 신생아의 이동 시 신생아 요람이나 신생아 침대를 이용하여 이동, 신생아의 출생 정보(산모이름, 성별, 출생 날짜)를 확인 후 산모에게 인계함. - 재원 중인 모든 신생아가 양와위 또는 측위 자세임 - 모든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며, 폭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없음 - 모든 산모가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재원 중인 산모 3인 선정)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이상 ~ 80% 미만 - 신생아의 이동 시 안전관리가 일부만 시행됨 - 신생아 중 일부(20%)가 옆드린 자세임(고개를 옆으로 돌려도 옆드린 자세인 경우는 모두 해당됨) -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지 않거나, 폭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있음(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3인 중 2 이상인) - 5개 중 1개 이상 해당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 신생아의 이동 시 안전관리가 시행되지 않음 - 대다수의 신생아가 옆드려져 있음(80% 이상) -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지 않거나, 폭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있음(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운다고 답함(3인중 2인 이상) - 5개 중 1개 이상 해당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이상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부록.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2021최종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준 분류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정규
	2.2	종사자 교육·계발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필수	
		1.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있다.	정규
			3. 신생아실에 사진관찰실이 있다.	정규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4.2	소방 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3.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필수
	4.3	낙상 예방관리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정규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Ⅲ. 운영과 질 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필수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필수
			4.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필수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5.3	문서관리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5.4	방문객 관리	3.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정규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정규
			2.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규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정규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정규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시범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준 분류
			3. 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8.2	개인보호구 착용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정규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8.3	세탁물 관리	1.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8.4	물품 소독·관리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8.5	환경관리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8.6	급식관리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3. 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정규	
8.7	종사자 관리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필수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필수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필수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정규
11. 모아애택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아애택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5.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확인	13.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14. 신생아 건강 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5. 신생아관리	15.1	위생관리	1.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규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15.2	신생아 수유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정규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15.3	안전관리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필수
15	30		98(필수 40, 시범 3)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